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 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단위: 명)

시험 방법	선발 예정			시 험 과 목
	구분	계급	인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9급	17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선택
	교육행정 (장애인)	9급	2	
	교육행정 (저소득층)	9급	1	
	사 서	9급	1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선택
	기록연구 (기록관리)	연구사	1	1차: 국어(한문포함), 영어(능력검정시험대체), 한국사(능력검정시험대체) 2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업(일반기계) 【특성화고】	9급	1	1차: 물리 2차: 기계일반, 기계설계
합 계			23	

※ 교육행정, 사서 직렬의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 2021년부터 기록연구 직렬 1차 시험과목 중 영어 및 한국사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붙임3】 기록연구 직렬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부터 전 과목이 필수화됨에 따라 조정(표준)점수 제도는 폐지됩니다.

2 시험 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 1형, 과목별 20문항)

구 분	공개경쟁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5과목	3과목
시험시간	100분 (10:00 ~ 11:40)	60분 (10:00 ~ 11:00)

나. 제3차 시험: 면접시험(인(적)성검사 포함)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 최종(면접)시험 합격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3 응시 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나. 응시연령

시험 구분	계급	응시 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18세 이상	2003. 12. 31. 이전 출생자
	연구사	20세 이상	2001. 12. 31. 이전 출생자

※ 특성화고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은 2021학년도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4.12.31. 이전 출생자)도 응시 가능

다. 학력 · 경력 · 성별

- 공개경쟁임용시험: 제한 없음
- 경력경쟁임용시험: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특성화고의 아래 해당(관련)학과 졸업(202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자로서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함**

직렬	직류	관련 학과
공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공고문에 첨부한 **【붙임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거주지 제한(다음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 가능)

- ①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②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았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도 위 요건과 같으며,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 ※ 거주기간 합산 요건(3년) 계산 방법은 「민법」제160조제1항을 따릅니다.

☞ 거주지 제한 예외 직렬: 특성화고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사서직렬 · 기록연구직렬만 해당

- 최종(면접) 시험일까지 유효한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을 충족해야 함

구분	직렬	직류	학력·자격증 등 제한
공개 경쟁 임용 시험	사서	사서	1급·2급 정사서, 준사서
	기록 연구	기록 관리	아래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단, 2011.5.23. 이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경우에 한하며, 2011.5.23. 이전부터 이수중인 경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일까지 이수하여야 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바. 장애인 구분모집

-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응시자는 **【붙임2】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반드시 지정한 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여 그 기간 동안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세대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또는 급여(지원)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명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 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의 기초생활보장담당자·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문제 출제

가.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및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과목별 출제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출제기관	출제과목	공개여부	문제책 회수여부
위탁출제	인사혁신처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험과목 중]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공개	미회수
공동출제	17개 시·도교육청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험과목 중 기록연구직렬] 국어(한문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험과목 중]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비공개	회수

- 위탁출제 과목은 공개하며 시험종료 후 해당 문제책은 회수하지 않고, 위탁출제 하지 않는 시험과목은 비공개이며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회수합니다.
- 사회, 과학, 수학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며, [사회]는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수학]은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수학에서 출제됩니다.
- [행정학개론]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으로 과목명이 변경되었으며, 지방행정이 출제범위에 포함됩니다.

- 2021년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험과목(출제범위) 안내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시 험 과 목(출제범위) (1·2차 병합시험)
경력 경쟁 임용 시험	9급	공 업 (일반기계)	제1차 필수(1): 물리 제2차 필수(2): 기계일반 기계설계(2015 교육과정상 '기계제도' 교과에서 출제)

※ 위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5 시험 일정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1·2차	필기시험	2021. 5. 24.(월)	2021. 6. 5.(토)	2021. 7. 2.(금)
제3차	인(적)성검사	2021. 7. 2.(금)	2021. 7. 16.(금)	2021. 8. 2.(월)
	면접시험		2021. 7. 23.(금)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je.go.kr>) '뉴스/소식>인사/채용/시험>시험정보>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1.12.31.까지,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1.12.31.까지 원서접수사이트(<http://edurecruit.jje.go.kr>)에서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적)성검사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입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2021. 4. 19.(월) 09:00 ~ 2021. 4. 23.(금) 18:00까지 (기간 중 24시간 접수)

나. 취소기간: 2021. 4. 19.(월) 09:00 ~ 2021. 4. 26.(월)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응시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시스템(<http://edurecruit.jje.go.kr>) → 「지방공무원채용」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마감일 마감 시간대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오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수수료: 5,000원 (연구사 7,000원)

마. 납부방법: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응시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단,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 ‘교육행정 저소득’ 구분모집 외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경우에 해당

- ‘교육행정 저소득’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는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아도 응시 원서가 접수됩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용 사진

- 사진파일: 3.5cm×4.5cm(파일 100Kb 이하), JPG형식, 해상도 100dpi, 컬러 증명사진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시험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수험생 본인 얼굴 정면(상반신)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 응시표 출력 · 지참

- 응시표는 2021. 5. 24.(월) 10:00 ~ 2021. 6. 5.(토) 10:00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시험당일 반드시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 유의사항

- 【수정, 취소】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접수 및 기존 원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하며, 취소는 2021. 4. 26.(월) 18:00까지 가능합니다. (단, 가산 자격증은 필기 시험 전일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 【수수료 환불】 응시수수료는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결제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취소기간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중복접수 불가】 본 공고문 내의 선발직렬 및 구분별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접수 확인】** 원서접수 후 응시원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접수번호가 기재되었으면 정상처리 된 것임) 기재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 응시자 과실로 응시가 불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확인】** 거주지 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학교장 추천】**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만 원서접수 할 수 있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를 접수하면 해당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PC환경】** 운영체제 윈도우 7~10, 익스플로러 버전 7~11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가산 특전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가. 취업지원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 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대상자 가산점이 모두 해당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가산점 하나만 선택 • 취업지원 또는 의사상자 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가산점 적용은 매과목 40%이상 득점 시 적용
나. 의사상자 등 대상자 (모집단위 10명 이상 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다.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21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가. 취업지원 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 합격자는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1577-0606) 및 지방보훈청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의사상자 등 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산 합격자가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의사상자 등 대상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취득하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아래표에 제시한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가산 비율
교육행정	교육행정	-	변호사	5%
공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	5%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가산 비율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3%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가산비율,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보훈번호와 가산비율(10% 또는 5%)을, 의사상자 등 대상의 경우 증서번호와 가산비율(5% 또는 3%)을 입력해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또는 증서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필기시험 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 자격증 가산점수는 직렬별 가산점 자격증 1개만 인정됩니다.
- 선택과목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자격증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

가. 적용직렬: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 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9

장애인 · 저소득층 초과 합격제

가. 해당직렬: 교육행정(장애인), 교육행정(저소득층)

나. 방법

- 필기시험에서 교육행정(일반모집) 합격선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합격 처리하며,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한 인원의 67% 범위 내에서 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단, 필기시험 초과합격인원이 1명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 합격 조치)

10

합격자 결정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단, 교육행정직렬(일반): 선발예정 인원의 120% 범위)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인(적)성검사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인(적)성검사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졸업 예정(2021학년도 고교 3학년 재학생)인 합격자가 해당 학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면 합격을 취소합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대학교 재학 등 학업의 계속 사유로 임용 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je.go.kr>) ‘뉴스/소식 →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란에 공고합니다.
-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1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09:20)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시험지 배부 후에는 시험실 입실이 불가함)
-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태블릿 PC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스마트안경, 스마트시계, 전자담배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 통신장비, 전자기기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 시작 전에 **전원을 차단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및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은 취소됩니다.
-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OMR카드 판독 점수를 원점수로 하며,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필기시험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로 표기해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수정하거나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 주어야 합니다. (**수정테이프만 가능,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적색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 답안으로 판독된 경우 또는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감독관의 시간 안내나 시험실 내 시계의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산 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시계, 문자 송·수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 시계, 스탑워치 등은 시험시간 중에 소지할 수 없습니다.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아래와 같이 전출이 제한됩니다.
 -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임용된 날부터 3년간 타 시·도 등 전출 제한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임용된 날부터 4년간 타 시·도 등 전출 제한

12 기타 사항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붙임2】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신청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지원 접수기간: **2021. 4. 19.(월) 09:00 ~ 2021. 4. 23.(금) 18:00까지**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이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j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뉴스/소식→인사/채용/시험→시험정보→지방공무원임용시험)
-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064-710-06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1부.
2.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 1부.
3. 기록연구 직렬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안내 1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je.go.kr>) ‘뉴스/소식’ →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란에 공고합니다.